

2026년 관세사 시험대비 주요 개정세법

1. 부가가치세법

(1) 가산세율의 변경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 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주 : 기존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됨(참고된 가산세율표 모두 확인후 암기필요)

(2) 질문 및 조사에 관한 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3)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적용 연장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주 : 2026년부터 적용예정 한도를 202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 공제대상금액 = (MIN : ①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② 공제한도)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50%(2028년부터 30%)	
개인사업자 (음식점외)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 65%, 2억초과 55%(2028년부터 각각 50%,40%)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음식점업 (2028년부 터 음식점 외와 동일)	1억원 이하 경우 : 과세표준×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경우 : 과세표준×70%
		2억원 초과 : 과세표준×60%

위의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4)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5)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

- 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 ②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2. 개별소비세법

- (1)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단, 탄력세율에 의해 2026년 4월 30일 현재까지 킬로그램당 현재 275원이다.)

*주 : 탄력세율의 적용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3. 주세법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

(1) 미납세반출승인신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참고-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필수 암기 세율

(1) 미등록가산세 등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① 사업자(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포함)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 × 1%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가산세 50% 감면)
	② 사업자가 타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③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급가액 × 2%

※ [㉠] ①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②, ③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말한다.

※ 위에서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① 사업자의 배우자
- ②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 지연발급, 불명, 미전송의 경우

내 용	가산세율
①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② 불명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③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둘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발급시	그 공급가액의 1%
④ 미발급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⑤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⑥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
⑦ 타사업장 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2) 미발급, 허위발급, 가공발급 등의 경우

내 용	가산세율
① 과다기재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의 2%
② 허위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③ 가공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4%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 미제출·부실기재의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액	공급가액 _주 × 0.5%

※ _주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2) 지연제출의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시
가산세액	공급가액 _주 × 0.3%
참 고	예정신고시 미제출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만 지연제출에 해당하고, 기타(확정신고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미제출에 해당함

※ _주 지연제출한 부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액	공급가액(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 × 0.5%

2) 경정시 제출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라 경정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액	공급가액(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 [※] × 0.5%

3)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가산세액	공급가액 [※] × 0.5%

※ [※]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4) 가공수취나 허위수취 과다기재(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4% 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③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과다기재로 공급자에게 과다기재분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의 2%